# 보상위원회 규정

Pulmuone

주식회사 풀무원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등기임원들을 공평하고 경쟁력 있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역할 및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회사의 등기임원의 보수 및 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의 부의 사항 검토 및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 제 2 장 구 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독립이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독립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

## 제 3 장 회 의

**제5조 (소집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 2 (외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보상에 관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조 (이사회와의 관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제9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등기임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 (다만, 독립이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 경영위원회에서 결의)

가. 성과목표를 포함한 보상체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과 평가결과

다. 개별 보수액

라.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그 밖에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상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미등기 임원의 퇴직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단, 퇴직금 지급기준은 등기/미등기 임원 동일하므로 포함하여 보고)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스탁그랜트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4 장 기 타

제11조 (위원회 지원조직)

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회 사무국은 간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0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항 제1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